

(가칭)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

The Necessity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entative Draft of “Act on Family Welfare”*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부교수 송혜림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최연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김난도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oc. Prof. : Hyerim Song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Assis. Prof. : Younshil Choi

Dept. of Consumer Science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Assis. Prof. : Rando Kim

◁ 목 차 ▷

I. 머리말

II.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III. (가칭)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의 구성체계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entative draft of “Act on Family Welfar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that we need a holistic family welfare system to enhance the family function. The suggested act of family welfare is consisted on 4 parts, General Provisions, Arrangements of Basic Plan and Policy,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for Family Welfare and

* 본 논문은 2000년도 대한가정학회 가정복지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한 <가정복지기본법안에 관한 연구>의 일부이다. 곧 이어 발표될 후속연구에서는 가정복지기본법 시안 마련에서 고찰한 외국의 사례, 다른 관련법과의 관계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certified Personnel.

주제어(Key Words): 가정복지기본법(act on Family Welfare), 통합적 가정복지체계(holistic family welfare system)

I. 머리말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가정학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가정복지라는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가정학을 주축학문으로 가정복지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제는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강화하고 가정위기와 해체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가정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모색은 나아가서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측면에 기초가 되는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복지기본법의 제정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은 가정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정학의 연구내용과 방향성, 가정학에서 배출하는 전문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가정학 연구자들이 시안마련의 과정과 맥락, 시안의 내용, 진행과정 등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력을 갖을 수 있을만한 기회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학 연구자들이 전심전력하여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장치마련과 노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배경을 다루고, 이 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정학 연구자들이 가정복지의 본질과 기초, 현실적 요구 등을 함께 인식하고 어떤 구체화된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공동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먼저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의 배경에서는 첫째, 가정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흐름을 살펴보고, 둘째, 가정생활 단위의 통합적인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루며, 이에 기초하여 셋째, 가정복지기본법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대상별 가족복지와 구별되는 통합적 단위라는 맥락에서의 가정복지 개념을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소개하며, 부록으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칭)가정복지기본법 시안 마련의 경과과정

본 연구자들이 가정복지기본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와 대한가정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가정복지와 관련된 심포지움과 학회, 연구위탁 등에서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정학계가 배출하고 있는 가정복지전문가, 즉 가정복지사의 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정부에서도 가족해체나 청소년범죄, 노인·아동문제와 같은 일련의 가족 관련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문건, 1999).

동시에 이제까지의 요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한 접근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가정문제 해결이나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다양한 유형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여건 마련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가정생활 적응 대책 마련, 가정의례에 대한 기본정신과 형식에 관한 모형과 대안 모색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가정복지특별위원회, 가정복지기본법 서명운동 참여를 위한 입법취지 설명서, 2000).

그러나 건전가정, 가정기능 강화 및 종합적인 가정복지사업을 위한 행정적 기반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며, 예컨대 건전가정 윤리업무와 관련, 사회보장기본법¹⁾ 등지에서 선언적인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정복지 관련 부서의 자리매김과 명확한 업무의 지정 및 그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가정복지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가정복지관련 연구와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가정복지특별위원회의 위탁으로, 본 연구자들이 가정복지의 기본개념정리와 관련법의 고찰을 중심으로 시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연구자들이 구성한 시안은 2000년 9월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의 부록에 제시하는 시안은 그 이후 관련부처 및 전문가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다소 조정된 결과이며 현재도 조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II.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가정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가정생활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정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은 상당한 정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통계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부 간 이혼율의 꾸준한 증가는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년이혼이나 노년이혼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혼생활을 길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문제나 재산분배 등에 있어서 가족 내부적으로 매우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도 인구동태 통계결과를 보면, 장기동거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여,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9.9년으로 지난 90년보다 평균 2.2년 정도 늘어났다. 여기에서 15년 이상 동거해

은 부부가 이혼한 비율은 지난 90년 11.9%에서 지난해 25.9%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이혼한 부부 4쌍 가운데 1쌍은 15년 이상 장기동거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하루 평균 1688명의 한국인이 태어난 반면, 675명은 사망했다. 또 매일 994쌍이 결혼하고, 323쌍은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유럽국보다 출산율이 낮아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13.2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은 OECD 내 29개국 가운데 9위로 미국·프랑스 등은 물론,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처럼 출산율이 전통적으로 저조한 북유럽 선진국보다 낮았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결혼건수는 7.7건으로 1990년대 들어 가장 낮았다(통계청, 「99년 인구동태」, 2000).

이러한 통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가정생활의 변화양태와 관련해서, 이미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가정생활의 기능 및 역할의 위기와 가정해체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가정생활과 관련되어 그로부터 파생된 제반 문제의 원인은 결국 가정생활의 역할과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는 데로 귀결된다. 특히 우리 나라는 모든 사회적, 정서적 자원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위기와 파괴의 사회적 영향력은 몹시 크다(박혜인 외, 1999).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정생활의 문제해결과 기능강화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한편 가정생활 관련 문제의 증가와 더불어 분업화, 전문화되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하여 가정생활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개발은 제반 분야의 최우선적 목표였으며, 따라서 공장노동, GNP, 수출, 임금, 생

1) 사회보장기본법 제 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박송규, 1998: 236-237).

산노동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공간, 가정, 가족생활, 재생산활동 등을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 사회에 비하여 가정은 너무나 왜소해졌으며, 가정은 비대해진 사회에 대하여 균형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은 가정생활의 부양기능을 점차 사회로 위임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가정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구성원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재생산활동의 가치가 부각되며, 노동에 대비되는 여가의 의미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생활을 통한 가족원의 요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현재의 가정생활문제는 이처럼 가정생활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가정생활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가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에 반하여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가정이 수행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기능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사이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으며, 그 격차가 날로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가정복지사업을 통한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 가정복지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복지기본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가정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며 주체적인 생활단위로서의 토대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가치와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가정 뿐 아니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예방과 보장에 대한 요구도 크다(송혜림, 2000b).

다시금 가정생활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생활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가정 외부적 조력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구혜령 외, 2000). 즉 핵가족화, 산업화, 도시화, 취업여성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가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함께 진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스스로 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정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개별가정은 이러한 조력을 계기로 복지기능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송혜림, 2000a).

결국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가정복지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생활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정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기존 관련법 분석

이와 같이 가정생활의 기능이 중요해 지는 때에, 동시에 가정생활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고 있는 이 때에 가정생활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과 조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가정복지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가족복지에서는 아동복지·노인복지·청소년복지·여성복지·장애인복지 등 개인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매우 분산되어 통합적인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효율적 복지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로의 통합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즉 가정생활을 대상별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하나의 체계로 접근하는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기존의 관련법들이 간과하는 통합적 가

정생활에 대한 관점과 그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과의 관련성 속에서 개인별 대상의 복지를 다루고 있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지에서 접근하는 가정생활의 개념과 기능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이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참조). 노인복지법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조항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정생활에서 노인의 복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시책과 기구, 계획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역시 제 3조 기본이념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한 채 이를 지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와 전문적 서비스내용을 간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 5조)만을 두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개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한 복지법이라는 점에서 가정생활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는 자체의 한계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합적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그 복지를 내용으로 다루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가정생활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관련법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전한 가정의례 보급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나, 그 아래 수단적이면서도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포함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 구성원의 욕구충족과 생활공동체로서의 활성화, 이를 도와주는 전문가, 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유사하게 <모자복지법>에서도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자원이 결핍된 문제상황을 전제로 모자가정의 건강하고도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고 모자가정의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편적·일상적 복지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과 치료 및 보장과 예방, 질적인 향상을 종합적으로 견지하는 관점은 간과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목표로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두고 있으나(제 3조), 이 또한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 보편적인 국민과 그 가정생활에 적용될 수 없는 제한을 갖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차별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을 촉진시킴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면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다루는 장에서 가정교육,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가사노동가치평가 등 부분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3. 가정복지기본법을 통한 가정생활 단위의 통합적 가정복지체계

이처럼 관련법들이 간과하는 측면과 제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의식주생활을 비롯한 가족관계와 가정관리 등 전반적인 가정생활영역에 걸친 문제의 해결과 치료, 방지와 예방, 지지, 보장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가정복지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은 사회적응 원조를 위한 법으로 그 기본 성격이 규정되고 있는데(남세진 외, 1997), 이는 최소한도의 욕구충족과 관련된 결핍된 상황과 문제상황의 해결에 초점을 두으로써 삶의 질 향상으로 향한 일상적 생활복지를 실현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통합성과 동시에 문제해결로부터 예방과 질적 향상으로의 복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서는 종합적 가정복지체계가 수립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합적인 가정복지체계가 구축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가정생활의 기능을 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정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와 행정기구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는 가정생활의 질 향상과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다루고 정책개발과 가정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가정복지기본법은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생활상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제도적인 장치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생활 중심의 복지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때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보다는 가정생활 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이다. 가족주의 전통이 여전히 강한 정서로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가정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는 더욱욱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가치와 관심 증가는 이제 문제가정 뿐 아니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예방과 보장의 성격을 담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가정생활문화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송혜림, 1999). 따라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기본법을 기초로 가정복지와 관련된 정책 개발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정생활의 기능을 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정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지원하는 기본적 과

제로서 가정복지기본법 제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III. (가칭)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의 구성체계

국가와 사회는 가정생활의 질 향상과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다루고 정책개발과 가정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가정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를 살펴 가정복지기본법의 기초를 삼고, 가정복지기본법의 세부적 내용을 구성한 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은 그동안 가정복지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크게 가정복지의 개념과 목적, 전달체계,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복지사의 활동 등을 주요 골격으로 삼았다. 따라서 가정복지의 개념과 목적은 총칙으로, 전달체계와 서비스 등은 주요시책·관련기구 조항으로 그리고 가정복지사의 활동은 전문인력 조항으로 분류하였다²⁾.

본 연구에서 (가칭)가정복지기본법의 시안을 구성함에 있어 분석한 관련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노인복지

2) 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마련한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 삭제되었고 수정되어 초기에 제시한 형태와는 다소 차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초기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가정복지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가정복지기본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체계를 구상하기까지 고려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기본법의 상당 부분 체계와 내용이 달라졌다 해도, 본질적으로 가정복지기본법이 어떠한가 한다는 구성체계를 논의할 때, 본 연구자들이 고려한 가정복지의 개념이 가장 중요했으며, 따라서 초기

법, 장애인복지법 등이다³⁾.

먼저 본 (가칭)가정복지기본법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복지의 개념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기본법의 시안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정복지의 개념

가정생활은 그 구성원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의 장인 동시에 사회구성의 기본적 단위로서 가정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이 물질 체계와 인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며, 기본적인 의·식·주생활과 가족관계, 그리고 가정경영 등 매우 다양한 체계간의 상호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가정을 통합적 단위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기존의 가족복지내용과 체계로서는 불충분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가족복지에서는 아동복지·노인복지·청소년복지·여성복지·장애인복지 등 개인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이라는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은 물적인 토대를 기초로 가족원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의 공동체이며,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는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일면이나 부분을 통한 접근으로 가정생활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아동이나 노인, 청소년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야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정생활의 맥락에서 조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종합컨대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대상별 가족복지와 구별되는 것이며, 가정생활의 통합성 즉 인적/물질체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족구성원의 응집성과 적응력, 자원의 조달과 분배, 합리적 관리, 일상생활에서의 생활문화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의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의·식·주생활과 가족관계, 자원관리, 가계생활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송혜림, 1999;

2000b; 이승미, 2000; 공인숙, 2000; 이완정, 2000; 최연실 2000).

따라서 이러한 가정생활의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정생활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적인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실천적 과정과 결과를 가정복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가칭)가정복지기본법 시안의 내용

1) 총칙 - 가정복지의 기초

가정복지의 기초에서는 가정복지의 목적과 이념, 개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책임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우선, 가정복지의 목적으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구성원의 복지증진, 가정생활개선,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제해결 등과 관련되어 전문적인 가정복지 사업에 이바지하고 가정생활의 자발적 복지활동 보장하는 것으로 삼았다. 또한 가정복지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가정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본법 제정의 목표를 체계화시켰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1조).

의 시안구성체제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과 가정복지에 대한 이념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둘째, 부록에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의 최종시안과 초기의 시안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고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수정되었는가를 알았으로써, 가정복지의 기본내용이 법의 형태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록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본 시안의 최종적인 형태는 원래 제시된 바와 같이 4장으로 구성된 체계가 아니라 총 12조로 축약되었다.

3) 이러한 관련법의 구성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노인복지법은 총칙, 경로연금,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는 총칙, 기본시책의 강구, 복지조치, 복지시설 및 단체,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인력,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며, 여성발전기본법은 총칙,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의 지원 등, 보칙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의 이념, 즉 본질적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 그리고 국가는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헌법의 이념을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본 가정복지기본법에서 토대하고 있는 가정복지의 이념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생활이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따라서 가정구성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고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가 나온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3조)

다음으로, 가정생활과 가정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가정생활은 가정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공통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능하며, 물적·인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하루하루 유지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생활의 공동체로 파악하였다. 또한 가정복지의 개념은 그동안 가정복지와 관련된 연구에서의 정의를 종합하여 가정생활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2조).

기본법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고려한 또 다른 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보장/촉진하여야 하며, 가정복지를 증진을 책임지는 단위로 이를 위한 제반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가정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가정복지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가정복지사업과 관련한 상담·교육·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과 가정의 가정복지요구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가정복지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복지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

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거나 이러한 활동을 가정복지관련 법인과 단체, 기관, 시설 혹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복지제도의 확립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의 책임 하에서 세부적으로는 관련 단체, 시설, 기관,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복지사업의 실시 및 제도운영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도 명시하였다.

한편 국민과 가정의 책임부분을 고려하여, 개별 국민과 가정은 실제적·잠재적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발적인 복지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가정복지사업에 협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비하여 국민의 권리는 가정복지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4조, 제 5조).

2) 기본계획과 시책의 강구

가정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으로는 먼저 필요조직의 구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는 가정복지의 실무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정복지센터와 가정복지상담소, 가정복지관련 정책개발기구인 가정정책개발원, 가정복지관련 의사결정기구/총괄위원회인 가정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조직의 기능을 가정생활의 기능강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구체화시켰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7조).

또한 가정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1년 중 하루를 가정의 날로 제정,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가정의 날 제정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⁴⁾.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4) 자문위원과의 조정과정에서 몇가지 조항이 삭제·수정되었는데, 가정의 날 제정에 관한 본 조항은 최종시안에서 삭제되었다.

장단기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가정복지시책의 틀로 삼는 발전기본계획 수립도 본내용으로 고려하였다. 이 발전기본계획에는 가정복지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방침, 추진방법, 재원조달과 분배방안, 가정복지의 전달체계와 기구, 가정복지 관련 기금운영방안, 가정복지사의 활동, 가정복지서비스의 제공체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가정복지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포함시켰다. 이 발전기본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기별로 설립하는 주요시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가정복지와 관련된 시책과 계획은 가정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가정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조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차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가정복지사업의 본격적인 내용은 어떠한가가 또한 조항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8조, 제 9조).

본 기본법에서 고려한 가정복지사업의 골격은 크게 예방, 교육, 상담이다. 예방이 포함하는 내용은 이미 가정생활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예방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가정생활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상담은 가정생활 과정에서 문제를 갖거나 취약점을 갖는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전문적 상담을 실시, 문제해결의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시켜 주고, 필요 자원의 조달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가정복지사업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가정복지상담전문가를 교육, 양성,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상담이 사후적 문제해결이라면 교육은 사전의 문제예방을 위한 하나의 시책이다. 가정생활주기를 고려, 각 생활주기별로 필요한 내용을 미리 교육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문제를 사전

에 예방한다. 따라서 이 상담조항은 최종시안에서 예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포함되었다.

가정복지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시책과 계획을 명시한 이 장에서는 기타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었다. 먼저 가정복지지원대책에 관련된 것인데,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가정복지전달기구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는 가정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개발,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가칭)가정복지센터의 위치, 운용자금의 원천, 가정복지사 고용과 관련된 차후 내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14조).

또한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진흥과 관련된 내용, 개인과 가정이 요구하는 가정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의 실태조사, 복지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13조).

3) 가정복지 관련기구 및 시설

이 장에서는 가정복지단체, 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와 시설에 관한 조항을 둬으로써 가정복지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전달기구와 전달체계의 필요성, 가정복지사업과 관련된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국가의 가정복지방향성을 규정하며 전문가양성체계를 관리하는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가정복지위원회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자격과 관련조항을 포함시켰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10조).

또한 가정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 범조항을 마련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가정복지사업이 정착되고 가정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전문가,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가칭)가정복지정책개발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자치단체나 일선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가정복지사업을 수행하

는 단위로서 (가칭)가정복지센터·가정복지상담소·가정복지정보센터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기구는 개인과 가정이 실제 접하게 되는 가정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마다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4) 전문인력

가정복지기본법의 마지막 장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가정복지사업을 전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 고용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가정복지기본법 시안 제 11조)

먼저 가정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과 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가정생활문제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조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양성과 배출로서 자격증 교부·가정복지사의 채용·재교육·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도 함께 포함한다⁵⁾.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기본법과 더불어 그 시행령을 함께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정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제시하였다. 시행령에서는 기본법에서 제시된 내용이 실제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바, 시행령의 목적, 기본법에 규정된 실태조사와 복지전담공무원, 전문인력 등의 채용과 배치, 정보센터와 위원회·정책개발원 등 관련 기구의 운영과 인적 구성체계 등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가정복지 전문인력으로서의 가정복지사의 자격등급, 결격사유, 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 자격의 보수교육, 가정복지사의 채용을 부칙과 함께 제시하였다⁶⁾.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가정복지

기본법 시안 마련의 배경과 그 구성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가정학 연구자들이 이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 진행과정에 보다 본격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가정복지는 시대적 요청이며 그 주축학문인 가정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구체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가정생활의 복지증진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시키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는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가정복지법 추진의 현황과 전망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가정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차원에서 사업과 과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조직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가정복지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법적 지위를 확실히 함으로써 가정복지사의 현장실천성 뒷받침할 수 있다.

셋째, 가정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넷째,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공식적 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과 보장이 가능하다.

5) 보건복지부와의 조정과정에서 수정된 내용 중 우리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가정복지사 대신에 가정복지전담요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물론 가정복지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정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나 관련 연구자들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정복지전담요원의 자격과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된 바, 그렇다면 가정복지전담요원은 가정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그 하나일 것이다.

6) 본 시행령은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시행령규정 작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전환되었다.

다섯째, 가정생활 중심의 통합적 법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가족복지 관련법들이 간과하는 법적인 틀을 확고히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기능 강화에 제도적 지지가 가능해진다.

여섯째,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예방과 보장의 내용을 함께 다룸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관련 연구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가정복지법의 입법화를 보다 빠른 시일에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가정복지 관련 전공자의 자세도 보다 적극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청회나 심포지움과 같은 기회를 통하여 관련 행정부서와의 접촉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입법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교육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동안의 가정복지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도 그러하거니와 본 (가칭)가정복지기본법 역시 현실적으로는 가정학에서 배출되는 가정복지전문가, 즉 가정복지사의 현장 확보와 활동근거의 마련이라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4000명이 넘는 가정복지사가 배출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정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구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정복지사의 미래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가정복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사업, 활동 등이 다양하게 가정복지사의 활동여건을 마련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와 관련되어서는 강의와 교육 그리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내용들, 예컨대 가정복지의 구체적 서비스모형과 프로그램, 가정복지정책, 가정복지전달기구 등이 후속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정복지특별위원회(2000). 가정복지기본법 서명운동 참여를 위한 입법취지 설명서.
- 공인숙(2000).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217-228.
- 구혜령 외(2000).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가정생활진단척도 개발에 관한 사업. 2000년도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발표 자료집.
- 박송규(1998). (개정판)사회복지법론. 한국법제연구원
- 박혜인 외(1999). 가정복지사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방안 - 가정복지센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행정부채출문헌. 미간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법령정보. 복지부관련법령.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1999).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문건.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45.
- 송혜림(2000a).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송혜림(2000b). 가정복지의 기본개념과 가정복지 기본법.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2000년도 학술세미나 <21C 가정복지의 전망과 과제> 자료집, 15-30.
- 이승미(2000).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과 실천방안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41-154.
- 이완정(2000). 가정복지사 양성 및 관리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160-182.
- 최연실(1999). 한국 가정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99-118.
- 통계청(2000). 「99년 인구동태」.

〈부 록〉 가정복지기본법 내용구성 시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라 함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2. “가정복지”라 함은 빈곤·질병·가족간의 갈등·폭력 등의 가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념) 가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의 기초단위로서 그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가정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정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정복지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가정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2. 가정복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재원의 조달

3. 가정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4. 기타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정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구역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가정복지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정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가정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가정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정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가정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정복지전담요원) ①가정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가정복지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복지전담요원의 자격·임용기준·직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정복지를 위한 연구·활동의 진흥) 국가는 가정복지의 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가정복지 실태조사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정복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가정복지센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가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복지의 요구도 조사 및 실태파악
2. 가정복지수혜자와 관련기관의 연계
3.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배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